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 이라는 명칭이 길어 사용자의 불편이 많아 재단 측에서 정관의 재단 명칭을 구미오성문화재단으로 변경 등록(2004.5.4)하여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지금까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명을 앞으로는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로 함으로써 재단명칭 사용을 편리하도록 하고자함.
- 제1조 및 제2조중 “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” 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” 으로 개정하고자 함.
-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중 “진흥재단” 을 “문화재단” 으로 하고 부칙 제2항중 “진흥재단” 을 “문화재단” 으로 개정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
-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

5. 검토의견

-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“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의 제명이 길어 사용자의 불편이 많아, 재단 측에서 정관의 재단 명칭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”으로 변경 등록함에 따라
- 제명을 “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”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